

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 개정 계획

규제완화에 따른 지방세 자치법규 일제정비와 관련하여 교부할 금전의 처리방법 및 체납처분 중지시 공고기간 연장, 알기 쉬운 법률 용어사용 등으로의 개정을 통해 납세자의 편의 등을 도모하고자 함

I 추진배경

규제완화 관련 지방세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

- 근 거 : 행정자치부 지방세정책과-1560(2015.4.23)호
서울시 세제과-8093(2015.6.2)호
- 상위법령 위임범위를 벗어난 조례내용 등 정비
 - ▶ 상위법령 위임규정 부존재, 위임범위 초과, 위임사항 소극적용

인용 법률조문 수정, 용어 정비 등 납세자 이해를 높이기 위한 알기 쉬운 법령기준(법제처) 반영

II 개정내용

교부할 금전의 처리방법 개선(제17조)

- 현 행 : 자치단체가 공탁한 교부할 금전은 공탁법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채권 소멸시효인 10년이 경과하면 국고에 귀속
- 개 정 : 공매 등에서 발생한 교부할 금전을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개정

체납처분 중지 시 공고기간 연장으로 납세자의 알 권리 보장(제39조)

- 국세징수법상 공고기간이 1개월이나 현행조례에는 10일로 규정된 바 이를 개선하여 납세자의 알 권리 보장

기타 법제원칙에 맞는 조문 정비, 알기 쉬운 법률용어 사용

- “우편”에 대한 정의 규정 삭제(제2조)
-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의 경우, 상위법령에 맞게 원칙적으로 기한만료일 3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고 예외적으로 만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단서 신설(제8조)
- “보통우편”을 “일반우편”으로 개정(제9조·제10조)
- 지방세기본법 제64조의 미납지방세 열람 신청자의 범위 축소에 따라 제14조제1항 중 “미납구세”를 “법 제64조에 따른 미납구세”로 개정(제14조)
- 조문명을 조례 내용에 맞게 수정하고, 상위법령에 맞추어 용어 정비(제18조)
- 조례의 원활한 이해를 위한 조문 구체화(제22조)
- 통일성 있는 조문구성을 위해 “한꺼번에 징수하여야 한다”를 “징수할 수 있다”로 용어 수정(제23조)
- 상위법령 위임범위에 벗어나거나 상위법령 위배 소지가 있는 일부조항 삭제(제19조, 제24조, 제29~31조)
- 상위법령에 규정된 용어 또는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라 정비(제25조, 제27조, 제28조, 제37조, 제45조)
- “법 제141조”를 “법 제141조 제1항 각호”로 수정(제47조)

Ⅲ 향 후 추 진 계 획

구 분	추 진 일 정	비 고
방 침 결 정	2015. 8. 7한	
입 법 예 고	2015. 8. 14한	
조례규칙심의회 상정 및 심의	2015. 9. 17한	
구의회 송부·의결	2015. 10. 8한	
공 포	2015. 11월 중	

붙임 :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」 개정(안) 및 신·구 대비표 1부. 끝.